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윤기섭 의원 외 25명

나. 의안번호 : 제3474호

다. 제출일자 : 2026. 02. 09.

라. 회부일자 : 2026. 02. 12.

2. 제안사유

- 서울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충전시설 사업자 등 입주업체들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선량한 입주업체 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서울시는 입주업체들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를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입주업체들의 협약사항 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 관내 공영차고지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주업체의 협약사항 의무 이행 관련(안 제6조제1항)

나. 입주업체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관련 (안 제8
조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02. 20. ~ 2026. 02. 24.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제6조제1항) CNG 민간 업체들과의 수익공유 협약에는 이미 ‘협약상 의무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 가능’ 규정이 있으므로, 금번 조례 개정안은 해당 협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주업체의 의무이행 담보를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타당하다 판단되며,
- (제8조제2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협약 내용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원안 가결하는 데 동의함.

1)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버스정책과-7700호(2026. 2. 20.)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조성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 등 입주업체들이 관련 협약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내 공영차고지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가 조성·운영 중인 공영차고지에는 운송사업자, 충전시설사업자 등 다양한 입주업체들이 일정 사용료²⁾를 내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고 서울시는 해당 입주업체들이 차고지

2)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충전시설사업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11.13., 2012.1.5., 2015.1.2., 2021.3.25.>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감정가액)의 1000분의 10

2. 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9.29.>

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17., 2008.11.13., 2009.9.29., 2024.3.26.>

④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및 관련 시설물을 올바르게 관리·사용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

- 현행 조례 제6조3)에서도 입주업체들이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4)에서는 입주업체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입주업체의 주의 의무에 더해 공영차고지 사용 관련 협약서를 체결한 입주업체가 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입주업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공영차고지에서 천연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CNG충전소 관리·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감독 소홀 문제가

3)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입주업체의 의무)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서울시는 'CNG충전소에 대한 운영개선 계획'⁵⁾을 수립하고 CNG충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음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 CNG충전소 수익공유 표준협약서'을 만들어 불가항력적으로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⁶⁾할 수 있음을 명시한 바 있음

- 따라서,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는 입주업체들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운영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며 동 조례개정을 통해 공영차고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강화 및 건전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CNG충전소에 대한 운영개선 계획' 보고 버스정책과-12399(2025. 4. 7.)

- 시의회 지적사항('24년 행정사무감사) 1.기부액 과소 산정문제 2.협약체결 주체에 시 불참 문 3. 법인세 이중 계상 문제

6) 'CNG충전소에 대한 운영개선 계획' 보고 버스정책과-12399(2025. 4. 7.)

- [붙임1] 서울시 CNG충전소 수익공유 표준협약서

제10조(벌칙) 제7조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본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울시”와 “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충전소” 운영을 위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